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복스 부도설 및 구조조정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합의)

중앙복스(신청인)는 신청인 회사가 부도설에 휩싸인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복스는 경영효율을 꾀하기 위해 직원 일부를 '1인 출판 기업' 형태인 인프린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구조조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다른 출판사는 A, B사로 소개하면서 유독 중앙복스는 실명을 거론했을 뿐 아니라, 실명이 함께 거론된 '21세기복스'는 해당 사 임직원의 인터뷰를 게재했으나 신청인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아, 아무런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중앙복스 직원들을 취재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도설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을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인프린트 방식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내보내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앙복스(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 내용

동아일보 : 『'도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내 용 : (전략) 최근 출판사 구조조정과 서점 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발행부수 등 출판 관련 통계에서도 위기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게다가 출판사들은 종이 값과 인쇄비가 오른 데다 환율까지 뛰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현재의 불황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기엔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중앙복스 구조조정 단행

최근 들어 대형 출판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인 중앙복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 그들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내는 인프린트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10대 메이저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A사와 전통 있는 인문 출판사로 인정받던 B사에 대해서도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직원을 감축한 출판사도 여러 곳이다. '마법 천자문' 시리즈 1000만부 판매를 넘어선 21세기복스도 지난해 16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줄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앙복스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2008년 10월 23일(목)자 기획면(A20면)에 게재된 ‘독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박스 구조조정 단행’이란 소제목을 달고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인 중앙복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앙복스는 최근 부도와 관련된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기사에서처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 중앙복스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 내 용 : 본보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출판계 위기의 계절」 기사와 관련, 중앙복스가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중앙복스는 최근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부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중앙복스는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을 기획출판 방식인 임프린트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경영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일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A16면)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등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모○○ 씨(신청인)는 KBS - 1TV <환경스페셜>의 ‘등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모 씨는 피신청인 방송사가 제시한 저작권료 및 조건이 맞지 않아 방송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촬영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PD가 자신에게 영상을 건네준 최○○ 씨가 영상의 원 소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영상을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고 해당 영상을 프로그램에 방영하였고, 이후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그러나 원 소유자에게 승낙 확인을 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모 ○ ○

보 도 내 용

피신청인 : KBS - 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KBS - 1TV : 「환경스페셜 - ‘등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 (2008년 10월 8일 22:00)

접 수 일 : 2008. 12. 24.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내 용 : 프로그램 중 '김은 딱새' 관련 모○○ 씨 촬영 영상 3컷(25초간) 방영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2009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본 사건의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이후에 재방송, 인터넷 방송 등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스크롤에 <영상협조 : 모○○>라고 표시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듀스’ 전 멤버 김성재 씨 자살보도 관련 중재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중재결정)

인기 그룹 ‘듀스’ 멤버였던 김성재 씨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씨의 어머니인 육○○ 씨가 김 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육○○ 씨는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을 뿐, 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결정이 김성재 씨의 자살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정정보도 등을 요구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해당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중재결정

등 (2008년 10월 2일자)

내 용 : 지난해 11월 개그우먼 정선희와 결혼한 탤런트 안재환이 8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유서가 나오지 않고 철관 위에 연탄 두 장이 피워진 것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연예인 자살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가수 유니는 지난해 1월 21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외할머니에게 발견됐다. 2년 만

보도내용

연합뉴스 :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의 새 음반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유니는 섹시미를 강조했던 2집 발표 이후 성형 논란 등에 관한 ‘악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가 자살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2월 10일에는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밝고 활달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정다빈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다빈의 죽음을 둘러싸고 당시 유족들과 소속사 측이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 22일에는 영화배우 이은주가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영화배우로서 꽃을 피울 나이에 전해진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그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울증 때문에 생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에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 2월에는 가수 장덕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으며 1995년 11월에는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어 1996년 1월 1일에는 가수 김광석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으며, 1월 6일에는 사수 서지원이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연합뉴스에서 지난 9월 8일자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10월 2일자 <꼬리에 꼬리 무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에서 ‘1990년대에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1995년 11월에는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 1995. 11. 20 = 그룹 듀스 김성재 호텔

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져’라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 되었고, 문제의 주사바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 저녁에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 보도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거 13년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언론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서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기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에 24시간 동안 게재한 후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을 2009년 1월 14일까지 이행을 완료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홈페이지 상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시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9월 8일자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10월 2일자 「꼬리에 꼬리 무는 연예인 자살사건」제하의 각 기사에서 탤런트 최진실·안재환의 자살과 관련, 90년대 이후 자살한 연예인 현황을 보도하면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95년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故 김성재의 모친인 신청인은 김성재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난 바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고, 다수의 언론사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를 전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대해졌다면서 2008. 12. 24. 당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액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 385)을 하였으나, 조정 계류 중에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분쟁은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건 중재신청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은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를 한 후 <별지3> 기재

‘중재합의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 중재부는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규칙 제34조에 따라 중재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중재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양 당사자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신청사항, 당사자 간 합의내용, 당사자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8.

<별지1>

1. 제 목: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2. 내 용: 지난 1995년 11월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로 활약하다 솔로로 데뷔한 김성재가 숙소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그 후로 만 13년이 넘게 흘렀지만 故 김성재의 어머니 육○○ 씨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풀리지 않은 의문에 속이 타는데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마다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더 가슴이 찢어진다. 지난해에도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이은 연예인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냈다.

육 씨는 “그동안 일부러 TV와 신문 등을 안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안재환, 최진실 씨 사건에 너무 가슴이 아파 인터넷을 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재의 이름이 다시 너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자살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든 언론이 합세한 듯 자살로 몰아가고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 알려져 있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왜 연예인의 죽음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명칭으로 바뀌가며 성재의 이름이 거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족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절대 아물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처럼 생각될 때마져 있습니다”

육 씨는 “안재환, 최진실 씨의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충분히 알 거 같다.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싶었다. 연예인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왜곡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난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왔으나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뜻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재는 당시 스태프와 숙소로 사용하던 호텔에서 오른쪽 팔목 뒷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 성재는 오른손잡이예요. 오른팔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그 부분에는 스스로 주사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 간신히 한 번 정도는 스치듯 잘못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8바늘을 자기 가 놓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 부검 결과 주사용 동물 마취제가 몸에서 나왔는데 그게 약물중독, 복음으로 둔갑했어요. 성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듀스의 김성재는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이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육 씨가 그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삭여온 분을 이제라도 풀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이 성재를 사랑해주는 이들 때문이다.

그는 “성재는 절대로 자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잘못된 사실이 각인되어질까 두려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싹텄다”고 밝혔다.

10여 년 침묵 속에 지내는 동안 육 씨는 또 한 번 가슴을 크게 쓸어내리는 사건을 겪어야 했다. 형을 따라 연예인의 길로 들어섰던 성욱 씨가 가수와 뮤지컬(그리스) 배우로 활동하다 2005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동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회복 후 화상환자가 겪어야 할 마음의 병이 아주 심했던 거죠. 부디 빨리 심신의 건강을 되찾길 바랄 뿐이에요”

성욱 씨는 주변의 격려로 이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항상 웃는 아이였던 성재도 하늘에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자’고 할 거예요. 제가 감히 용서는 못 해도 이해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와서 범인을 찾아 처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재가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사실을 제대로 밝혀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육 씨는 인터뷰 내내 김성재의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의 학창시절, 귀국해 한국에서 듀스로 활동하고 솔로로 데뷔해 활동할 때까지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때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때로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성재가 세상을 떠난 그때는 너무 놀라 차마 울 수도 없어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성재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육 씨는 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에 아직도 방황하는 유족들의 심적,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정확한 검증을 거쳐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연예인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깨우쳐 주고 싶

다”고 덧붙였다.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고

연합뉴스 :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제
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자 인터뷰면)

<별 지3> 별지1 참조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

‘여자소녀원의 희망고백’ 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SBS - TV <뉴스 추적>의 ‘미안해 엄마, 여자소녀원의 희망고백’ 프로그램이 여자소녀원에서 생활하는 김선희(가명)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한 김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서○○, 장○○ 씨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자,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초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취재차 방문한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촬영 거부사를 밝혔고, 이후 방송에 나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해 촬영하였으나,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돼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송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신청인들에 손해배상액 각 1,500,000원 씩 지급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장○○

피신청인 : SBS - 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 내용

SBS - TV : 『뉴스추적 - ‘여자소녀원의 희망고백’』 프
로그램 (2009년 1월 7일)

내 용 :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 소녀원인 ‘안양 소
녀원’. 이곳에는 폭력과 절도, 성매매 등의 갖가지 범
죄를 저지른 10대 소년 2백여 명이 국가의 통제 아래

생활하고 있다. 대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뉴스추적에서 소녀원생들의
일상을 한 달간 밀착 취재했다.

“소녀원은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 같은 곳”

흔히 ‘소녀원’ 하면 ‘소년 교도소’의 이미지를 떠올
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취재진이 체험한 소녀원은 일
반 학교에 가까웠다. 단, 사회에서 격리된 채 엄격한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달
랐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취침, 식사, 운동은 물론 목
욕도 단체로 해야 한다. 사회에서 방종에 가까운 생
활을 했던 아이들은 낮은 단체생활에 힘들어 하고 있
었다.

무너진 가정, 상처받는 아이들

남자친구와 함께 취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입소한 선희(19). 선희는 현재 임신 6개월의 예비엄

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으나 어린 나이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은 선희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각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1.서○○, 신청인 2.장○○에게 2009년 2월 20일까지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들에게 위 금액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본 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보도 및 사과 합의)

김무성 의원은 주간신문인 일요서울이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이 동향인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 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도하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단 한 차례도 박 회장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구설수에 오른 사실도 없으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성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후원금 관련 음해성 왜곡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보도 내용에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하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국회의원)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일요서울 : (1)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7일자 2~3면)

(2)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5일자 2~3면)

내 용 : (전략)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이 소원해했다는 소문과 관련 또 다른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은 정치적 스타일이 다르다”며 “박 전 대표가 물리라면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은 불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 의원의 경우 박 전 대표가 없는

보도 내용

언론조정중재신청사례

사석에서 공공연히 ‘박근혜’, ‘박근혜’라고 얘기한다”며 “박 전 대표는 그런 점 역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스타일의 차이가 박 전 대표와 소원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으로 지목했다.

정가에서는 둘 사이가 소원해진 단초는 지난 경선 때 재산가인 김 의원이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캠프에 제공하지 못해 패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고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음해성 소문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가 더 악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됐다.

소문의 내용을 보면 부산 출신의 태광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같은 동향인 김 의원이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부산 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회장은 부산에서 IMF 위기 때에도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며 “통상 정가 인사들과 만날 때 마다 500만 원씩 현찰로 건네주곤 했다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현직 의원 2~3명이 더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무성 의원에 관한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1월 4일자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이라는 제목의 두 건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

설수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하여 김무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향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및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두 건의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금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 시 사실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김무성 의원에게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가입 활동 보도 관련 중재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중재결정)

나라사랑청년회는 중앙일보가 신청인 단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MB퇴진 운동을 했으며,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도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보도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나라사랑청년회는 자신 단체가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20~30대 직장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결코 정치단체가 아니며, 이 단체 회원인 박○○ 씨 역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가 아님에도, 해당 언론사가 사실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라는 인물과의 인터뷰 등을 실었다. 박 씨는 "이 잡지사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기고 의뢰를 했지만 나의 정체가 드러날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동아 송문홍 편집장은 본지와 의 통화에서 "지면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략)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대선 때 MB퇴진 운동 단체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1면)

내 용 : '미네르바' 박○○(31)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9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 박 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 씨는 또 검찰에서 시사주간지 『신동아』에 기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 '인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가입 활동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0일자 1면에 "대선 때 MB퇴진 운동 단체/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박○○ 씨가 지난 대선 때 MB퇴진운동을 전개한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미네르바' 박○○ 씨는 이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단체 회원들은 "청년회는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과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20, 30대 모임으로서 결코 정치단체는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필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보도문을 2009년 2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화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노무현 토론방’도 참여…)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우측 하단에 <별지2>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9년 1월 10일자 1면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으며, 이 단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박○○ 씨가 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긴 하였으나 ‘미네르바’ 박○○ 씨와는 동명이인일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과 이 단체는 20, 30대 직장 청년들이 정치적 활동 외에 동아리 활동,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건강한 청년단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2009년 1월 15일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0)을 하였다가 2009년 1월 21일 조정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 21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전제하였으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혔다.

한편 신청인은 ‘미네르바’ 박○○ 씨는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나라사랑청년회’가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정치활동 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밝히길 원한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박○○ 씨는 1969년 1월 13일생으로 30대 초반인 미네르바 박○○ 씨와 동일인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또한 자신의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 제목 및 본문을 통해 신청인 단체를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해당보도를 접하게 되더라도 신청인 단체를 정치활동에 국한된 단체로 인식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신청인 단체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 박○○ 씨가 ‘나라사랑청년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하도록 하고, ‘나라사랑청년회’는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취지로 반론보도함이 마땅하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당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하도록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별 지1>

1. 제 목: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본보 지난 10일자 1면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인 <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 단체에서 활동한 박대성 씨는 동명이인이며 미네르바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회원들은 “청년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20~30대 모임이다”고 밝혀 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4일자 2면)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